

교 정 학

문 1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분류심사의 제외 및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징역형·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- ②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-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- ④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.
- ⑤ 소장은 분류심사의 유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하나,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
문 2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·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,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소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.
- ⑤ 소장은 원칙적으로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3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,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,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ㄴ.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,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.
- ㄷ.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·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ㄹ. 소장은 수형자가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·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ㅁ.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상 중(重)경비처우급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.

- ① ㄱ, ㄴ
 ② ㄱ, ㄷ, ㄹ
 ③ ㄱ, ㄷ, ㅁ
 ④ ㄴ, ㄷ, ㅁ
 ⑤ ㄴ, ㄹ, ㅁ

문 4. 애그뉴(R. Agnew)의 일반긴장이론(general strain theory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인적 수준에서의 열망(aspiration)과 기대(expectation) 간의 괴리로 인해 긴장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.
- ② 아노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주된 연구들은 거시적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.
- ③ 목표달성의 실패, 긍정적 자극의 소멸,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통해 범죄가 유발된다.
- ④ 자신에게 중요한 이성 친구와의 결별이나 실연, 친한 친구나 가족의 사망 등은 긍정적 자극이 소멸한 예라 할 수 있다.
- ⑤ 같은 수준의 긴장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.

- 문 5. 「소년법」상 보호처분 중 처분 상호 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?
- ①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
 -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
 - ③ 사회봉사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
 - ④ 수강명령과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
 - ⑤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과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
- 문 6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상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.
 -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.
 - ④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 -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문 7. 범죄사회학의 주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머튼(R. Merton)의 ‘아노미 이론’은 기회구조가 차단된 하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중산층 범죄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.
 - ② 클로워드와 올린(R. Cloward & L. Ohlin)의 ‘차별적 기회구조이론’은 성공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머튼의 가정에 동조하지 않는다.
 - ③ 쇼와 맥케이(C. Shaw & H. McKay)의 ‘사회해체이론’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거주자들이 증가하면 과거 이 지역을 지배하였던 여러 사회적 관계가 와해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생태학적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.
 - ④ 레머트(E. Lemert)의 ‘낙인이론’은 일차적 일탈자가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하는 데에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반응이 공식적 반응보다 더욱 심각한 낙인효과를 끼친다고 주장한다.
 - ⑤ 갓프레드슨과 허쉬(M. Gottfredson & T. Hirschi)의 ‘범죄의 일반이론’은 범죄의 발생에는 개인의 자기통제력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기회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.

문 8.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학 이론을 주창한 이론가는?

반사회적 범죄자를 두 가지 발달경로로 분류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청소년 범죄를 청소년기 한정형(adolescence-limited)과 생애과정 지속형(life course-persistent)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. 청소년기 한정형은 늦게 비행을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비행이 한정되는 유형을 의미하며, 생애과정 지속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행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지속 또는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.

- ① 쏘베리(T. Thornberry)
- ② 라이스(A. Reiss)
- ③ 샘슨과 라웁(R. Sampson & J. Laub)
- ④ 브레이쓰웨이트 (J. Braithwaite)
- ⑤ 모피트(T. Moffitt)

문 9. 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(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)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,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.

ㄴ.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한다.

ㄷ. 형의 시효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함으로써 인하여 완성된다.

ㄹ.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「형법」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

ㅁ.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ㄴ, ㅁ
- ③ ㄱ, ㄷ, ㄹ
- ④ ㄷ, ㄹ, ㅁ
- ⑤ ㄱ, ㄴ, ㄹ, ㅁ

문 10. 현행 법령상 사회봉사·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,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.
- ②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상 법원은 「형법」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,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나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사회봉사·수강명령은 당해 대상자의 교화·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,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.
- ④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,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.
- ⑤ 법원이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「형법」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함에 있어,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,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.

문 11. 「소년법」상 소년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. ㉠과 ㉡에 들어갈 옳은 숫자의 합은?

죄를 범할 당시 (㉠)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(無期刑)으로 처할 경우에는 (㉡)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.

- ① 29
- ② 31
- ③ 33
- ④ 35
- ⑤ 38

문 12. 교정처우를 시설 내 처우, 사회적 처우(개방처우·중간처우) 및 사회 내 처우(지역사회 교정)의 세 가지로 구분할 때, 사회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사회봉사·수강명령
- ㄴ. 하프웨이 하우스(halfway house)
- ㄷ. 보호관찰
- ㄹ. 외부통근
- ㅁ. 주말구금
- ㅂ. 갱생보호
- ㅅ. 귀휴
- ㅇ. 가석방

- ① ㄱ, ㄴ, ㅁ, ㅇ
- ② ㄱ, ㄷ, ㅂ, ㅇ
- ③ ㄴ, ㄷ, ㄹ, ㅅ
- ④ ㄴ, ㄹ, ㅁ, ㅅ
- ⑤ ㄷ, ㄹ, ㅂ, ㅇ

문 13. 집중보호관찰(intensive probation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
- ②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시 약물남용경험, 가해자-피해자 관계, 초범 시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.
- ③ 일반보호관찰보다는 감독의 강도가 높고, 구금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낮다.
- ④ 집중보호관찰은 대개의 경우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정하고,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행하게 한다.
- ⑤ 집중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편적이다.

문 14. 현행 법령상 <보기 1>의 위원회와 <보기 2>의 위원 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—<보기 1>—

- ㄱ.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
- ㄴ. 분류처우위원회
- ㄷ. 징벌위원회
- ㄹ. 보호관찰심사위원회
- ㅁ. 가석방심사위원회

—<보기 2>—

- A.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
- B.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
- C.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
- D.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8인 이하
- E.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

- ① ㄱ - A
- ② ㄴ - C
- ③ ㄷ - E
- ④ ㄹ - B
- ⑤ ㅁ - D

문 15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라야 한다는 연령상의 제한이 있다.
-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④ 소장이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중(重)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없다.
- 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될 수 있다.

문 16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며,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-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으나, 주·부식, 음료,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.
-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는 없다.
- ⑤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.

문 17.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이탈, 자살, 자해하거나 이탈, 자살, 자해하려고 하는 때
-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
-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
- ④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·심리, 이송,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
- ⑤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·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

문 18. 「소년법」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호자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,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,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은 단기 보호관찰처분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.
- ④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,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

문 19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소장은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소장은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·소독하여야 한다.
- ③ 소장은 작업의 특성, 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2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.
- ⑤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.

문 20. 구금제도 중 하나인 오번제(Auburn system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820년대 초 린즈(E. Lynds)에 의해 시행되었고 엄정독거제에 비하여 인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.
- ② 주간에는 수형자를 공장에 혼거 취업하게 하되 상호 간의 교담을 엄격히 금지하고,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여 취침하게 하는 제도이다.
- ③ 완화독거제 또는 침묵제(silent system)라고도 불린다.
- ④ 인간의 본성인 공동생활의 습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공동작업 중 악풍감염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.
- ⑤ 공모에 의한 도주·반항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문 21. 조선시대 이전의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족국가인 부여국에 원형옥(圓形獄)이 있었다.
- ② 고구려에는 5종의 형벌 외에도 죄인의 얼굴에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삼루형(鋌鏤刑)이 있었다.
- ③ 조선의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.
- ④ 조선의 도형의 복역기간은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 5종으로 구분된다.
- ⑤ 조선의 유형수(流刑囚) 중에는 유배지에 처와 첩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다.

문 22. 교정의 이념으로서 재통합(reintegration)을 채택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행정의 변화는?

- ① 가석방 및 부정기형 폐지
- ② 교도소에서의 엄격한 질서유지 강조
- ③ 보호감호제도 신설
- ④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대인관계 개선프로그램 신설
- ⑤ 중간처우소 신설

문 23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전화통화(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) 및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, 편지수수,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.
- ②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.
- ③ 소장은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서로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- ④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(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)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되, 소장은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⑤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되,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.

문 24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상 전자장치부착명령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「형법」 제152조제1항(위증)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제1호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「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·손상,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문 25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9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,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ㄴ.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ㄷ.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.
- ㄹ.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ㅁ.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ㄴ, ㄷ
 ② ㄱ, ㄴ, ㅁ
 ③ ㄱ, ㄷ, ㄹ
 ④ ㄴ, ㄹ, ㅁ
 ⑤ ㄷ, ㄹ, ㅁ